

데이터 3법 개정 및 재개정 주요내용

2021 AI Ethics and Law

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

목차

- I.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 및 경과
- 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- 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

I.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 및 경과

▪ 데이터 3법이란

- 데이터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한 3가지 핵심 법률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정보통신망법)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신용정보법)

I.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 및 경과

▪ 기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및 문제점

• 기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

-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나,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, 위치정보법 등이 각각 적용
- 그 외에도 의료법, 보험업법,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 산업별 규제법령에서 개인정보 규제

• 기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

- **개인정보를 넓게 해석하는 실무 관행**: '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'에 관한 기준이 없어 법원과 행정청이 이를 매우 넓게 해석해왔고, 대부분의 정보가 개인정보로 해석되는 문제가 존재하였음
- **개인정보 개념의 틀 부족**: GDPR과 달리,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개념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,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음
- **엄격한 동의 제도**: 엄격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'사전 동의'를 요구하고, 동의에 의해 허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범위나 동의의 예외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였음
- **적용법률의 혼란**: 여러 관련 법률이 존재하여 적용 법률 확정이 어려웠음
- **규제권한의 분산**: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 소관,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며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규제권한이 분산되어 있었음

I.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 및 경과

▪ 개정 배경

• 기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개선 필요

-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,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므로,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
- 기존 거버넌스 체계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 존재
 -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

•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필요

- 2018년 EU GDPR(개인정보보호법) 발효에 따라 EU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GDPR 준수 필요
- 국가 차원의 EU GDPR 적정성 평가 통과시 국내 개별 기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면제
 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EU GDPR 적정성 평가 절차 추진

I.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 및 경과

▪ 개정 경과

- **2018년 초** **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'규제·제도 혁신 해커톤'**
 - 정부, 법조계, 산업계, 시민단체 등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개인정보 규제체계를 개선·정비하기로 합의
 - 개인정보 개념의 틀을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구분
 - 가명정보는 ① 공익적 기록 보존, ② 학술연구, ③ 통계 목적을 위하여 당초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
 -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절차·기준 마련,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성 평가 기관 설립 등 제도 정비
 -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
- **2018. 11. 15.** **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발의**
 - 위 해커톤 합의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이 발의됨
- **2020. 1. 9.** **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**
- **2020. 7. 28.** **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**
- **2020. 8. 5.** **데이터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**
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

목차

- I. 데이터 3법의 개정 및 경과
- 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**
- 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-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
-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활용 및 결합을 위한 기반 마련
- 합리적 관련성 범위 내의 동의 없는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
- 개인정보 규제권한 일원화

2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

-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활용 및 결합을 위한 기반 마련
- 신용조회업 관련 규제 완화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(MyData) 도입
-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
- 자동화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 보장

3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

-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▪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

- “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”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

기존 개인정보보호법	개정 개인정보보호법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</p> <p>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</p> <p>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p>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▪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

- “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”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

개정 전

- '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'에 관한 기준이 없어 법원과 행정청이 이를 매우 넓게 해석해왔고, 대부분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해석

※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회사가 이용자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“식별번호 자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,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'쉽게 결합해' 개인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”고 판시(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23. 선고 2010고단5343 판결)

개정 후

- 다른 정보를 입수하여 결합하면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, **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다른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**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▪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활용 및 결합을 위한 기반 마련

기존 개인정보보호법	개정 개인정보보호법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</p> <p>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</p> <p>1의2. "가명처리"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28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28조의3(가명정보의 결합 제한)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.</p>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-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활용 및 결합을 위한 기반 마련
 - 개인정보 개념의 틀을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구분
 - (전문기관을 통해)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 허용

구분	개념	활용가능 범위
개인정보	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,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	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
가명정보	추가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	다음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활용가능 ① 통계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 ② 연구(산업적 연구 포함)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
익명정보	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(복원 불가능할 정도로)조치한 정보	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활용 및 결합을 위한 기반 마련

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 판단기준 예시(2020. 1. 9. 행정안전부 보도자료)

개인원본정보

이름	생년월일	핸드폰	직장전화	자택전화	주소	직업	가족	예금 평균잔액	대출액
홍길남	67년1월3일	010-9999-3333	055-747-0088	055-2345-6789	경남 창원시 마산구 합포동 123	국회의원	배우자 아들1 딸1	4,567,900원	45,896,789원

(잘못된) 가명정보 예시

* 이름, 생년월일 등을 삭제하고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하였으나, '창원시 마산구에
주소를 둔 국회의원'이라는 극소수 사람에 관한 정보로 개인 식별 가능

이름	생년월일	핸드폰	직장전화	자택전화	주소	직업	가족	예금 평균잔액	대출액
- * 삭제	- * 삭제	ajeajkc93 * 암호화	- * 삭제	- * 삭제	경남 창원시 마산구 * 범주화	국회의원	배우자 아들1 딸1	4,567,900원	45,896,789원

(제대로 된) 가명정보 예시

* 사실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 불가능. 다만,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
알면 복원가능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

이름	생년월일	핸드폰	직장전화	자택전화	주소	직업	가족	예금 평균잔액	대출액
- * 삭제	- * 삭제	ajeajkc93 * 암호화	- * 삭제	- * 삭제	경남 창원시 마산구 * 범주화	- * 삭제	배우자 아들1 딸1	4,567,900원	45,896,789원

익명정보 예시

* 그 자체로,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

이름	생년월일	핸드폰	직장전화	자택전화	주소	직업	가족	예금 평균잔액	대출액
- * 삭제	- * 삭제	- * 삭제	- * 삭제	- * 삭제	경남 창원시 마산구 * 범주화	- * 삭제	가족 3명	400만원 ~500만원	4,000만원 ~5,000만원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- 합리적 관련성 범위 내의 동의 없는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

기존 개인정보보호법	개정 개인정보보호법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<신설>	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<신설>	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- 합리적 관련성 범위 내의 동의 없는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

개정 전

- “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범위를 좁게 해석
※GDPR: ‘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’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양립가능성 개념)

개정 후

-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이 아니더라도, **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**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에 따라 **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**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

▪ 개인정보 규제권한 일원화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, 행정안전부, 방송통신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
 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 개선, 정책 수립·집행, 금지행위 조사·처분 등 개인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권한을 보유
-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

기존 개인정보보호법	개정 개인정보보호법
<신설>	제7조(개인정보 보호위원회) ① 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(이하 "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2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

-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활용 및 결합을 위한 기반 마련
 -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 규정
 -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을 허용
 - 빅데이터 분석, 이용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
 - 신용정보회사 등에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, 시행 의무화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2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

▪ 신용조회업 관련 규제 완화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(MyData) 도입

- 신용조회업 관련 규제 완화
 - 최소자본금 요건 완화

신용정보법 (현행)		
인가단위	최소자본금	금융회사출자요건
개인CB	50억원	적용(50%이상)

신용정보법 (개정안)		
인가단위	최소자본금	금융회사출자요건
개인CB	50억원	적용(50%이상)
① 비금융전문CB	5억원/20억원*	배제
② 개인사업자CB	50억원	적용(50%이상)
기업CB	기업등급제공	20억원
	기술신용평가	20억원
	정보조회업	5억원
		배제

* (5억원) 비정형 데이터, (20억원) 대량의 정형 데이터

-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도입
-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2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

▪ 신용조회업 관련 규제 완화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(MyData) 도입

- 본인신용정보관리업(MyData) 도입

-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허가제로 도입

※ 예: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통합자산관리서비스

▪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

-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, 정부,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2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

▪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 보장

-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 실시 여부 및 자동화 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, 기초자료 등의 설명 요구 가능
- 자동화 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, 삭제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 가능

※ 자동화평가: 신용정보처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3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

-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변화 및 전망

▪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활용으로

기존 규제

- '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전적 규제

현행 규제

-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넓히되 **금지규정 위반 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위반 사업자 등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사후적 규제**

※단, 기존 규제 관행, 규제 완화 반대 여론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가능성 현존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▪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3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사례

F사의
구 정보통신망법
위반에 따른
행정처분
(2020. 11. 25.)

혐의사실

-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
: 이용자가 F사 사이트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"F사 친구"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되었으며, "F사 친구"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
-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
-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음

판단: 시정명령, 과징금 및 고발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▪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3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사례

L사, 대리점, 매집점의
개인정보 보호 규정
위반에 따른
행정처분
(2020. 12. 9.)

혐의사실

- L사 대리점은 (i)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사 동의없이 재위탁하고, (ii)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없는 매집점과 공유하였으며, (iii)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하였으며, (iv)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
- L사 매집점은 (i)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수집·이용하고, (ii)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, (iii)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하고, (iv)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
- L사는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

판단: 시정명령, 과징금 및 과태료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변화 및 전망

▪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

• 개인정보 범위 축소 및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 증대

- 개인정보의 '결합가능성'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
- 일정 목적에 포함되는 경우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 불요

• 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

- 신용조회업 관련 규제 완화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(MyData) 도입
-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로 '데이터 댐'을 제시하고 있으며, 하위 사업으로 데이터 수집, 축적 및 가공, 데이터 활용, 데이터/AI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임

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
▪ [참고]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1년도 핵심 추진과제



목차

- I. 데이터 3법의 개정 및 경과
- II.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
- 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▪ 재개정 추진 배경

- 데이터 3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당시, 일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 반영 유보
 -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 내용*을 차기 법 개정 시 반영하는 것으로 유보
- *개인정보 이동권,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 등

•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거나 기업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개정 필요

- 불합리한 규제*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- *필수적 사전 동의 제도, 경직된 국외 이전 요건, 온-오프라인 규제 이원화 등

➔ **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보호와 활용의 균형있는 규율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 필요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▪ 재개정 추진 경과

- 2020. 8. **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수요 발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 T/F 운영**
- 2020. 9. **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**
- 2020. 11. 16. **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구 위원회 출범**
- 2020. 11. 26. **청와대 비서 실장 주재 수석·보좌관 회의 상정**
- 2020. 12. 9. **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▪ 재개정안 주요 내용

1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-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
-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
-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

2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- 동의제도 개선
-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(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)
- 형사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
-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▪ 재개정안 주요 내용

3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

- 개인정보 자율 보호 활성화
-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 설치
-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

4 기타 과제

- 개인 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
-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 마련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1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▪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

필요성

-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·유통되고 있음에도, 정보주체는 본인의 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·활용하는데 한계
- 금융·공공 분야 등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근거*에 따라 Mydat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

* (신용정보법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, (전자정부법 개정 중) 공공분야 데이터 이동권

검토안

-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의 **개인정보 이동권 신설**
※ 대상 정보의 범위, 제공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
→ **기대효과: 정보주체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& 전 분야로 Mydata 확산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1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▪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

필요성

- 인공지능의 발전 등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결정(신용등급, 인사채용 등)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제기
 -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
- * 현재 신용정보법에서 금융 분야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이의 제기권 규정

검토안

-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과 또는 이에 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, **거부권, 이의제기 및 설명요구권 등 신설**
- ※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,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적용 배제
- ➔ **기대효과: 산업적 효용과 정보주체 권리 간 균형을 고려한 대응권 도입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1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▪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

필요성

- 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신청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
-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 한계

검토안

- 분쟁조정 요청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**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**
- **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 부여**
 - 기대효과: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**실질적인 권리구제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2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▪ 동의 제도 개선

필요성

- 주요국 대비 복잡하고 경직적인 동의제도 운용
-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, 정보주체 역시 복잡한 절차로 인해 '동의를 형식화가 만연해있음'
* 2019년 개인정보 실태조사 결과, 응답자의 60%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미확인

검토안

- **동의절차를 통합**하여 계약 체결시, 계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까지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
- 동의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, **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전 인증제를 도입**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
→ 기대효과: **실질적 동의권 보장 &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·활용 지원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2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▪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(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)

필요성

- 데이터 3법 개정시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을 특례 규정으로 단순 이전
 - 오프라인 규제(일반규정)·온라인(특례규정)의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 부담
- *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, 오프라인 기업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(일반규정 적용), 온라인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3% 이하 과징금(특례규정 적용) 부과

검토안

- 정보통신서비스 **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규정으로 일원화**
- ※ 중복되는 특례규정은 통합하고, 특례규정에만 있는 규정(손해배상 보장, 국내 대리인 지정,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등)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
- ➔ **기대효과: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동일하게 규율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2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▪ 형사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

필요성

-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도 징역 등의 형사벌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의 과중한 부담 및 업무 회피 초래
- 현행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,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% 이하
※ EU GDPR의 과징금 부과 기준: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총 매출액의 4% 중 높은금액

검토안

- **형사벌 중심을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**
※ 형사벌 제한: 형사 처벌 대상을 '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'의 행위로 제한
※ 과징금 확대: **과징금 부과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,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% 이하로 상향**
→ 기대효과: **제재 실효성 제고**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2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▪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

필요성

-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해외 상품 구매 확대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,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요구로 인해 기업 부담 유발
-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 취약 지역으로 개인정보 이전될 우려
※ EU 국민은 해외 상품 구매 과정에서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결정, 표준 계약 조항 등에 기하여 동의없이 이전 가능

검토안

- 요건 다양화: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정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는 동의없이 국외 이전 허용
- 보호조치 강화: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, 국외이전 중단, 회수·파기명령 가능
→ 기대효과: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3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

▪ 개인정보 자율 보호 활성화

필요성

-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·기관의 자율보호 활성화 필요

검토안

- **분야별 자율 규제 단체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**
※ 자율 규제 활동 우수 단체 소속 기업·기관은 자료 제출 및 검사 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

▪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 설치

필요성

- 개인정보 감독 기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부재
※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원 중이나, 정보산업 진흥 및 보호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

검토안

- **개인정보 보호 지원 전문기관 신설**
※ 개인정보 보호 시책 조사·연구, 교육·훈련, 기술개발, 인증·평가, 위탁 사업 등 수행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3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

▪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

필요성

- 개인정보 유출,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등 위험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직권조사·시정권고 등 법적 근거 미비
-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이용 및 수탁자에 대한 제재근거 부재

검토안

- 직권조사 근거 신설
- 시정명령 부과요건 합리화
- 개인정보취급자가 '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 시' 처벌 근거 마련

※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도 과태료·과징금·형벌 등 제재 대상에 포함

III. 개인정보 보호법 재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4 기타 과제

▪ 개인 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

필요성

- 이동형 영상기기(드론, 자율주행차 등) 특성에 맞는 규율 기준 부재
※ 현재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영상정보는 사전동의가 곤란하고, 열람·정정·삭제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 개인정보와 다른 특성이 존재하나 일반 규정이 적용됨

검토안

- **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법률 제정 추진**
※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

▪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 마련

필요성

-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규정에 가명정보 파기의무, 반출 심사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보완 필요

검토안

- **미비 규정 개정·신설**

감사합니다



허성욱 교수

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(08826)
TEL: 02 880 9137 | Email: heosw@snu.ac.kr



김정민 변호사

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법무법인 세종(03155)
TEL: 02 316 1911 | Email: jmkim@shinkim.com

law.snu.ac.kr

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서울대학교 및 작성 연구자에게 속하므로,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, 복제, 배포,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또는 본 자료 내 기재된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